

가상자산 업계  
간담회 논의안건

# 가상자산거래소 점검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

2026. 4. 6.

금 융 위 원 회  
금융정보분석원  
금 융 감 독 원  
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

# 목 차

I. 그간 경과 .....	1
[참고 1] 긴급대응반 운영 경과 .....	2
II. 주요 점검결과 .....	3
III. 제도개선 추진방향 .....	6
IV. 향후 계획 .....	9
[참고 2] 자산 실질보유 여부 점검 결과 .....	10
[참고 3]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결과 .....	11
[참고 4] 「2단계 가상자산법」 반영 계획 .....	12

## I. 그간 경과

- '26.2.6일, '빗썸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\*'로 인해 거래소의 고객자산 보관 및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 확산
  - \* 빗썸 이벤트 참여자(695명)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,000원이 아닌 2,000 BTC를 지급하는 등 총 62조원 상당의 가상자산 오지급
- 특히, 인적 오류 제어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성 노출 → 거래소의 신뢰성·안정성에 대한 불안 여론 증폭
- 사고 발생 직후 금융위·FIU·금감원·DAXA 공동 '긴급대응반'을 구성(2.7일)하여, 거래소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착수

"이번 사태를 계기로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,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"(금융위원장 지시사항, 2.8일)

- **(빗썸)** 「가상자산법」 등 관련 법령,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 점검 등을 위해 FIU·금감원 검사 실시(2.10일~)
- **(여타 거래소)** 4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'긴급대응반' 주도로 현장 점검, 회계법인 실사, 서면조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,
  - ▲고객자산 잔고대사 ▲거래 시스템의 취약점 ▲준법감시·위험관리체계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

### < '긴급대응반' 점검 개요 >

- **(구성)**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(반장), FIU, 금감원, DAXA
- **(점검기간)** '26.2.10일(수)~3.6일(금), 약 3주간
- **(점검대상)** 국내 4개 원화거래소(빗썸은 내부통제체계만 점검\*)
  - \* 금감원·FIU 검사 일정 등 감안하여 내부통제체계 관련 서면조사만 실시
- **(점검방법)** ▲장부 - 블록체인상 고객자산 잔고대사 ▲잔고대사 시스템 시연 ▲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징구 ▲업무 담당자 면담 등

## 참고 1 긴급대응반 운영 경과

일 자	주요 활동
2.6일	○ 빗썸 이벤트 보상금 오지급 사고 발생
2.7일	○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'빗썸 비트코인 오지급' 관련 「긴급 점검회의」 개최 → <b>긴급대응반 구성·출범</b> ○ 금감원, 빗썸 현장점검 착수
2.8일	○ 금융위원장 주재 빗썸 사태 관련 「점검회의」 개최 → <b>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시</b>
2.10일	○ 금감원, 빗썸 정식 검사로 전환, FIU, 자금세탁의무 위반 관련 검사 착수 ○ <b>긴급대응반 1차 회의 개최</b> → 거래소 현장·서면점검 계획 및 향후 일정 등 논의·확정
2.11일 ~2.13일	○ <b>4개 거래소 현장점검 실시</b> (☞ 총 14명 점검인원 투입) - 업비트(2.11일) → 고팍스·코빗(2.12일) → 코인원(2.13일) ○ <b>5개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 서면조사</b> (2.13일~) - DAXA 「표준 내부통제기준」을 토대로 총 48개 항목에 걸쳐 체크리스트 징구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○ <b>4개 거래소 외부 회계법인 실사</b> (2.11일~) → 재무결산 회계법인이 아닌 별도 회계법인을 선정, 독립적 실사 진행
2.25일	○ <b>긴급대응반 2차 회의 개최</b> → 거래소 현장·서면점검 중간 진행 상황 공유 및 추가 점검 필요사항 등 논의
3.5일	○ <b>5개 거래소 추가 서면조사 실시</b> (3.5일~) →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(이벤트 보상 지급 등)에 대해 심층 점검
3.6일	○ 금감원·FIU 빗썸 검사 종료, 외부 회계법인 실사 종료
3.9일~ 3.20일	○ <b>긴급대응반 3·4차 회의 개최</b> →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 종합 논의

## II. 주요 점검결과

- ✓ **(고객자산 잔고대사)** 거래소별로 잔고대사 주기·운영 기준 등에 편차가 크고, 외부감사 보고서 공시 등도 미흡
- ✓ **(고위험거래 관리)** 임직원 수작업이 필요한 거래의 처리 과정 전반(검토·승인·통제)에 걸쳐 리스크 식별·관리 등 소홀
- ✓ **(내부통제시스템)** 자율규제 형태로 이뤄져 이행력 담보 부족, 준법감시업무 및 위험관리체계 운영 전반이 취약

### 1. 고객자산 잔고대사 미흡

- ① **(자산 실질보유 여부)** 2단계 검증결과, 모든 거래소가 장부상 위탁 가상자산 이상의 수량을 보유 중인 것을 확인(☞ 참고 2)
  - (1단계: 긴급점검) 현장점검을 통해 거래소별 5종류 내외 가상자산을 임의 선택 → 전산장부와 지갑(블록체인 데이터)에서 보유 중인 수량 비교
  - (2단계: 회계법인 실사) 거래소별로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(전체 위탁 자산의 약 90%)에 대해 보관·관리실태 및 실제 보유 여부 등 심층 실사
- ② **(잔고대사 실태)** 거래소별로 대사 주기·운영 기준 등에 편차가 커 사고 등 발생시 이용자 보호에 문제 발생 우려 상존
  - (대사 주기) 상당수(3개) 거래소는 '일 단위 대사'만을 실시 → 오지급 등으로 불일치 발생시 적시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
    - \* [거래소별 주기] C거래소 5분, D거래소 10분 < 기타 3개 거래소 24시간
  - (운영 기준) 거래소별 대사 불일치 판단기준, 이에 따른 경보 및 조치 매뉴얼\* 등도 제각각으로 체계적 대응 곤란
    - \* (예) 오지급 등으로 대사 불일치 발생시 ▲3개 거래소는 거래차단조치(Kill Switch) 부재, ▲D거래소는 사태 장기화 판단시 거래차단 가능

③ (외부감사 실태) 모든 거래소가 매분기 회계법인 실사(자율)를 받고 있으나, 실사 범위에 차이\*가 있고 공시내용도 불충분

\* (예) 일부 회계법인은 지갑 통제권(점유 여부), 전자서명 유효성 등은 미확인

○ 특히, 모든 거래소는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보유량은 공시하지 않고 '장부 대비 실제 보유비율'만 형식적 공개

## 2. 고위험거래 관리 부적정

□ 자동화된 거래가 아닌, 임직원 수작업이 필요한 '고위험거래\*'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리스크 식별·통제 등 소홀

\* (예) 이벤트 보상 지급, 보이스피싱 피해자산 환급, 오입금 자산 환급 등

① (지급준비 단계) 일부 거래소는 '고유계정'과 '고위험거래 계정'을 별도 분리\*하지 않아 오류 발생에 취약

\* (예) 100만원 보상금 지급시 전산장부에 별도 계정 생성 후 100만원 先입금 → 이후 동 계정에서 수령자에게 보상금 이전시 총 100만원 초과 지급 불가

② (검토·승인 단계) 대부분 거래소에서 사전 지급계획과 실제 지급대상·종목을 자동 검증(Validity Check)하는 시스템 미비

- 또한, 실무자의 단독 전산변경 또는 부서장 1인 승인만으로 집행이 이뤄지는 등 리스크에 비례한 '다중 승인체계' 부재

③ (통제·사후관리 단계) 일부 거래소는 복수 부서의 전산장부 변경 허용 등 권한 통제 미흡, 의심거래\* 확인·관리 체계도 미비

\* (예)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미미한 이용자에게 대량의 가상자산 입고 등

단계	점검 항목	A	B	C	D	E
준비	거래 계정 분리	x	x	o	o	o
검토·승인	지급대상·종목 검증	x	x	o	x	x
	다중 승인체계 여부	x	x	o	x	x
통제·관리	접근 권한 통제	o	x	o	o	o
	의심거래 확인체계	o	x	o	x	o

### 3.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소홀

- ① (준법감시업무) 업계 자율의 '표준 내부통제기준'은 마련\*되어 있으나, 그 이행을 점검·관리하는 준법감시체계 운영은 미흡

\* DAXA 제정 「표준 내부통제기준」, '23.6.1일 시행

- ① (준법감시 범위) 거래소별로 준법감시 대상 업무 범위가 상이하며, 업무 전반이 아닌 특정 항목에 편중된 사례\*도 존재

\* (예) 2개 거래소는 '임직원의 가상자산 매매 점검' 등 특금법상 명시된 항목의 이행 여부만 점검하고, 표준 내부통제기준상 업무는 점검하지 않음

구 분	A	B	C	D	E
내부통제 현황 주기적 점검	○	X	○	○	X
업무 접근 권한 점검	○	X	○	X	X
직무분리·명령휴가 이행 점검	X	X	○	X	X
광고·홍보물 적정성 점검	○	X	○	○	X

- ② (준법감시인 점검) 일부 거래소는 내부통제 현황의 주기적 점검 (연 1회 이상) 및 점검결과 보고(이사회) 등 기본절차도 누락

- ③ (환류·관리) 금융사고 등 취약부문 점검·대응을 위한 「내부통제 위원회(매반기)」를 연 1회만 개최하는 사례 등 형식적 운영

- ② (위험관리체계) 대부분 거래소는 업무수행 및 각종 거래 관련 위험을 적절히 인식·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 미비

- 3개 거래소는 ▲사고 등 우발상황 대비 비상계획 ▲인적 오류, 시스템 결함 대응 등을 위한 '위험관리기준' 부재

\* 오지급 등 사고 발생시 내부보고·승인 및 금융당국 보고체계 등도 미비

- 4개 거래소는 위험관리기준을 점검·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 및 '위험관리위원회'도 미설치 → 위험대응체계 공백 발생

구 분	A	B	C	D	E
위험관리기준 마련	○	○	X	X	X
위험관리책임자 임명	○	X	X	X	X
위험관리위원회 설치	○	X	X	X	X

### Ⅲ. 제도개선 추진방향

◇ ①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, ②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, ③내부통제 실효성 확보의 '3개 축'으로 추진

⇒ 우선 DAXA 자율규제를 신속히 개정(4월)하되, 이행력 확보, 등을 위해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주요내용 반영·추진

#### 1.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

① (잔고대사 표준화) 잔고 불일치 발생시 즉각 경보·조치할 수 있도록 업권 공동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마련·의무화

① (대사 주기) 절차별 평균 소요시간\*, 전산시스템 부하 정도, 시장 사례 등을 고려, '5분 이내'로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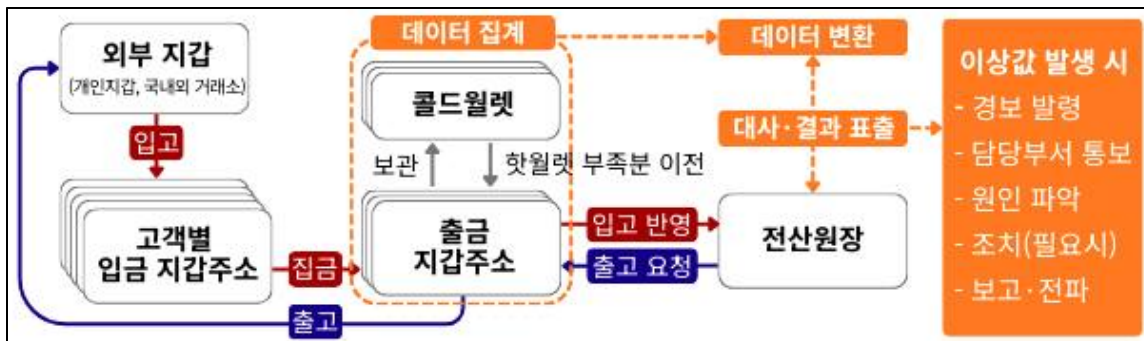
\* (예)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종목별 잔고 데이터 집계(1분) → 대사 가능 형태로 데이터 변환(2분) →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형태로 표출(1분)

② (자동 경보) 블록체인 - 장부 간 수량에 유의미한 차이 발생시 시스템 자동 경보(Alert) 발령, 담당 부서 통보절차 등 체계화

③ (조치) '원인 파악 → 보고 → 오류 정정, 전파' 등 절차 표준화, 대규모 불일치 발생시 거래차단조치(Kill Switch) 기준 마련 등

④ (공시) 투명성·적시성 등을 위해 일별 대사결과 공시도 의무화

<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흐름 (예시) >



- ② (외부감사 내실화) 회계법인을 통한 주기적(매분기 → 매월) 감사를 의무화하고, 거래소 지갑에 대한 실사 방법\* 등도 체계화

\* 거래소의 지갑 점유 확인(소액 이전 테스트), 전자서명 유효성 테스트 등

- 외부 실사보고서 공시도 의무화하되, 공시범위도 가상자산 '종목별 블록체인·장부상 보유 수량' 등으로 확대

\* [현행] 종목별 장부 대비 실제 보유비율 → [개선]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, 장부 보유 수량, 장부 대비 실제 보유비율, 부족 사유·조치결과 등

👉 DAXA 자율규제 개정, 전산시스템 구축 및 2단계 가상자산법 반영 추진

## 2.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

- (업무기준 마련) 수작업이 불가피한 고위험거래 업무 처리시, 오지급 등 사고 예방·통제를 위한 업무절차·기준 마련

① (계정 분리) 이벤트 보상 등 수기 지급을 위한 가상자산은 거래 항목별 별도 계정으로 구분·관리

② (자동 검증) 입력단위·총량 등을 사전 계획과 대조 후 불일치시 거래가 자동 거부되는 '유효성 확인(Validity Check)' 시스템 구축

※ 거래 종류별 한도를 사전 설정(예: 이벤트 보상금 10만원)하고, 이를 초과시 입력이 자동 거부되는 '초과수량 입력방지(Limit & Range Check)' 장치도 도입

③ (승인) 거래 입력자·승인자를 명확히 분리하고, ▲제3자 교차 검증 ▲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및 승인 절차 다단계화

④ (통제·관리) 전산장부 변경 권한은 담당 임원 레벨에서 관리, 의심거래 식별·조치를 위한 추출기준 보완 등

👉 DAXA 자율규제 개정,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

### 3.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확보

- ① **(준법감시 강화)**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마련, 점검·환류 내실화 등을 통해 거래소 준법감시 역량을 상향 평준화
  - ① **(준법감시 체계화)** 거래소 영업행위 전반을 촘촘히 점검할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'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\*' 마련
    - \* ▲내부통제 거버넌스(조직·기능, 직무 분리, 업무 매뉴얼), ▲이용자 보호(자산분리 보관, 지급관리), ▲시장운영(이상거래감시, 상장), ▲준법교육, ▲외부 컨설팅 등 포괄
  - ② **(점검 강화)** 준법감시인이 (연 1회→)매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 후 그 결과를 이사회 보고(금융당국 통보)토록 의무화
  - ③ **(내부통제위원회)**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, 개최 주기 단축(매반기 → 매분기) 등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 유도
- ② **(위험관리체계 구축)** 대부분 거래소의 위험관리체계 미비가 확인된 만큼, 우선 DAXA 주도로 업계 공동의 기준 수립
  - 해킹·전산사고 등 **우발상황 대응**, 인적·시스템 오류 제어 등 가상자산 거래에 특화된 '표준 위험관리기준' 제정
  -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및 금융당국 보고 의무화, 금융회사에 준해 '위험관리위원회' 구성·운영방법 등 체계화

👉 DAXA 자율규제 제·개정 및 2단계 가상자산법 반영 추진

- ③ **(이행력 확보)**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전까지는 금감원·DAXA 주도로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적정성 등을 매분기 점검
  - 거래소의 자율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DAXA가 심의·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→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 병행

👉 DAXA 자율규제 제정

## IV. 향후 계획

- 4.6일, 금융위(사무처장) 주재 업계 간담회를 계기로, 관계기관 합동 '거래소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' 발표
- 4월 중, DAXA 자율규제 제·개정 및 거래소별 내규 반영
  -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및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구축도 순차적으로 추진
- 법령 개정사항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·추진하되, 금융위·금감원·DAXA가 함께 자율규제 이행 여부 등도 매분기 점검

주요 과제		조치사항	
		자율규제 등	2단계 가상자산법
①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	잔고대사 표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개정(4월)</li> <li>■ 전산시스템 구축(~5월)</li> </ul>	주요 내용 반영
	외부감사 내실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개정(4월)</li> </ul>	
②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	업무기준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·홍보 행위 모범기준 개정(4월)</li> <li>■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기준 개정(4월)</li> <li>■ 전산시스템 구축(~5월)</li> </ul>	하위규정 반영
③ 내부통제체계 실효성 확보	준법감시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표준 내부통제기준 개정(4월)</li> </ul>	주요 내용 반영
	위험관리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표준 내부통제기준 개정(4월)</li> <li>■ (가칭) 표준 위험관리체계 운영 규정 제정(4월)</li> </ul>	
	이행력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가칭) 자율규제 운영 및 제재 규정 제정(4월)</li> </ul>	

## 참고 2 자산 실질보유 여부 점검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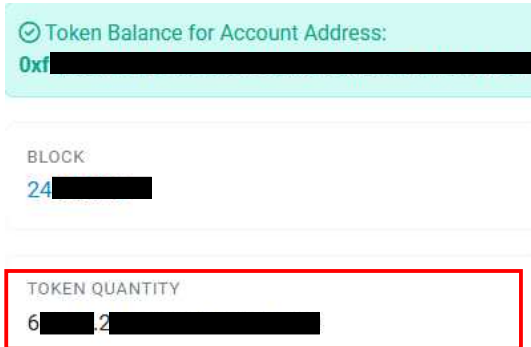
- ① (긴급 현장점검) 거래소별 상위 20개 종목 중 임의 종목 선정  
 → 현장에서 보유 수량 비교, 일치 여부 확인
- 거래소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'가상자산 보유내역(월말)'과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통해 지갑에서 확인한 수량을 비교

< 거래소별 실질보유 점검 종목 >

가	나	다	라
로커스체인(LOCUS)	스텔라루멘(XLM)	이더리움(ETH)	엑스알피(리플, XRP)
이더리움(ETH)	온도파이낸스(ONDO)	시바이누(SHIB)	이더리움(ETH)
메타hint(MTHT)	수이(SUI)	체인링크(LINK)	시바이누(SHIB)
엠스퀘어(MSC)	헤데라(HBAR)	페페(PEPE)	온도파이낸스(ONDO)
크레딧코인(CTC)	아발란체(AVAX)		체인링크(LINK)

\* 특정 시점 기준으로 블록체인 지갑 보유수량 확인이 용이한 네트워크 위주로 점검

< 현장점검시 보유 수량 확인 결과 (예시) >

금감원 제출자료 내 종목정보		동일 시점 블록체인상 보유 수량
거래소	OO	
종목명	LINK	
contract address	0x514910771AF9Ca656af840dff83E8264EcF986CA	
block	24*****	
address	0xf***** *****	
balance	6*,***.2*****	

- ② (회계법인 실사) 거래소별 시총 상위 20개 종목(전체 위탁자산의 90%)의 전산원장상 잔고와 블록체인 지갑상 보유 수량 실사

< 회계법인 실사 결과 (요약) >

	실사기준 시점	회계법인	장부 대비 보유비율
가	'26.2.10일	○○ 회계법인	100.14%
나	'26.2.11일	◇◇ 회계법인	103.56%
다	'26.2.11일	□□ 회계법인	100.39%
라	'26.1.31일	☆☆ 회계법인	100.10%

### 참고 3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점검결과

◇ 현장·서면점검을 통해 ①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및 ②이행·관리실태, ③위험관리체계 운영 현황 등 3개 항목 중점 점검

⇒ 금융회사에 비해 ②·③ 항목이 미흡·미비한 것으로 판단

1] (내부통제기준 마련<sup>보통</sup>) DAXA 「표준 내부통제기준」은 「지배구조법」, 금투협 ‘표준 내부통제기준’ 등을 참고하여 제정

\*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▲지배구조, ▲내부통제 조직·기준, ▲준법감시인, ▲영업행위 준수사항, ▲이해상충관리, ▲AML 방지체계 구축 등 항목을 대부분 포함

⇒ 모든 거래소가 DAXA 표준기준을 별다른 수정없이 내규화·운용함에 따라 형식적인 내부통제기준 체계는 구비

2] (내부통제 이행·관리<sup>미흡</sup>) 거래소별로 준법감시 역량에 편차가 매우 크고, ‘내부통제위원회’ 운영은 전반적으로 미흡

○ 2개 거래소는 법상 의무가 아닌 사항은 준법감시 프로그램(위반 적발 등)에서 대부분 제외, 1개 거래소는 일부 항목만 포함

※ 반면, 2개 거래소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내부통제기준도 대부분 포괄

○ ‘내부통제위원회’ 개최 실적도 저조한 가운데, 취약부문 점검·개선 등 업무와 관련된 가시적 성과 미미

※ ‘내부통제위원회’가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되는 금융회사와 달리 거래소는 대표이사·준법감시인 등 내부 임직원만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취약점 노정

3] (위험관리체계 운영<sup>미비</sup>) 1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업무 수행시 위험을 인식·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\* 부재

\* 위험관리기준 마련, 위험관리책임자 임명, 위험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등 3개 항목

○ 사고 등 우발상황, 인적 오류, 시스템 결함 등에 대한 대응이 거래소마다 제각각, 위험대응체계에 공백 발생 우려

## 참고 4 「2단계 가상자산법」 반영 계획

### <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>

#### ①-1 잔고대사 표준화

- 이용자 디지털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,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의무 부과

\* 잔고대사 주기, 대사 결과에 따른 거래차단 조치 등은 하위규정 반영

#### ①-2 외부감사 내실화

- 회계법인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, 실사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의무 부과

\* 외부감사 주기(매월), 실사방법(지갑점유 확인) 등 세부사항은 하위규정 반영

### < 내부통제체계 실효성 확보 > ※ 「지배구조법」과 동일수준으로 규정

#### ③-1 준법감시 강화

-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,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

\* 내부통제기준 세부내용,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·업무범위 등은 하위규정 반영

#### ③-2 위험관리체계 구축

-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,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

\* 위험관리기준 세부내용,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 등은 하위규정 반영

➔ 위 의무 위반시 기관(영업정지 등) 및 임직원(해임요구 등) 제재, 과태료 부과 근거 등도 함께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담보